< 정 오 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8.01.12

3. 주요 정정사항

- **회계기간 종료에 의한 결산내용 반영**
- **자펀드 삭제**
- **법 개정사항 반영**

[규약]

항 목	변경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해지된 자펀드 삭제	③ 이 투자신탁은 - - 반영한다. 1.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유리트리플알파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3.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③ 이 투자신탁은 - - 반영한다. 1.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유리트리플알파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삭제>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법 개정사항 반영	3. 투자신탁재산을 - - 행위 가.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3. 투자신탁재산을 - - 행위 가.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법 개정사항 반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부 칙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신청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갱신에 따른 연혁 추가		2018.01.12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갱신 - 자펀드 삭제 - 법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	결산갱신		기준일자로 업데이트(운용현황 등)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상환된 자펀드 삭제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도식 별첨>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도식 별첨>
		나.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유리트리플알파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나.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유리트리플알파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삭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삭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단 생략)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단 현행과 동일)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3년 경과로 연환산 표준편차 반영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미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되 국내주식에도 40% 이하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유리자산운용㈜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 수준인 4등급 (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는 1.28% 수준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은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국내주식에도 40% 이하로 투자하여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보통 수준인 4등급 (보통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 등급 변동 없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결산 갱신	-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및 상환된 자펀드 삭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결산 갱신		기준일자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로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라.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 - 않습니다.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라. 손해배상책임 ③ 증권신고서 - - 않습니다.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별첨>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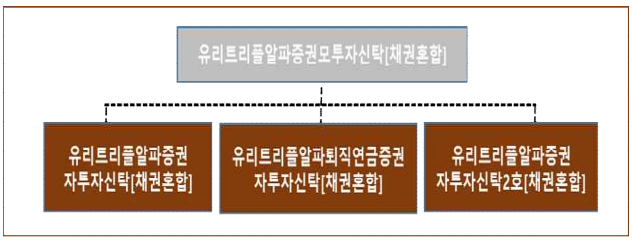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유리트리플알파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유리트리플알파퇴직연금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유리트리플알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변경 후]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유리트리플알파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유리트리플알파퇴직연금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